

제397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2년5월9일(월)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32)
2.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30)
3.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55)
4.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906)
5.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8)
6.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8)
7.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54)
8.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75)
9.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50)
10.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9)
1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6)
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23)
1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86)
1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10)
1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7)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2)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99)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24)
1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1)
2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98)
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27)
2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6)
2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88)
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85)
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51)
2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4758)

2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78)
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41)
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26)
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03)
3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1)
3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48)
3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36)
3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52)
3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64)
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65)
3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39)
38.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30)
39.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45)
40.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15)

상정된 안건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32) 3
2.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30) 3
3.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55) 3
4.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906) 3
5.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8) 3
6.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8) 3
7.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54) 3
8.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75) 3
9.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50) 3
10.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9) 3
1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6) ... 3
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23) ... 3
1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86) ... 3
1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10) ... 3
1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7) 4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2) 4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99) 4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24) 4
1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1) 4
2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98) 4
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27) 4

2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6)	4
2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88)	4
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85)	4
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51)	4
2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58)	4
2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78)	4
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41)	4
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26)	4
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03)	4
3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1)	4
3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48)	4
3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36)	4
3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52)	4
3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64)	4
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65)	4
3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39)	4
38.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30)	4
39.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45)	4
40.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15)	4

(15시27분 개의)

○소위원장 안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 법률안별로 심의를 마치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과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기록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32)
2.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30)
3.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55)
4.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112906)

5.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8)
6.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8)
7.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54)
8.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75)
9.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50)
10.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9)
1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6)
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23)
1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86)
1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10)
1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7)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중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2)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99)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24)
1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중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1)
2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98)
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27)
2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8966)
2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3288)
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85)
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51)
2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58)
2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78)
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41)
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26)
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03)
3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1)
3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48)
3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중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36)

3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452)
3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064)
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565)
3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6139)
38.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30)
39.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45)
40.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15)
(15시28분)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40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17항과 제20항은 지난 5월
6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것으로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다른 안건들과 직접 관련성
이 인정되어 오늘 함께 심사함을 알려 드립니다.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법안 심사를 위해서 1항부터
10항까지 법률안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의견을 주
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고령자고용촉진법입니다.

자료 4페이지를 봐 주시면 이 개정안의 내용은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청문
절차를 신설하려는 부분입니다. 시행규칙 사항을
법률로 올리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자료 5페이지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입니
다. 이 개정안은 6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7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통합하려는 것으로 정부 계획에 따
른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의 경우에는 9명이 외부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고 그 임기가 2024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정의견은 자료 8페이지 하단에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임기를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 다라고 기술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입법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부분은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민간위원회에 대해서 공무원 의제규정을 신설하려는 부분입니다.

자료 20페이지를 보시면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를 두어 공무상비밀누설, 뇌물 등에 대해서 벌칙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책임성 강화 취지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자료 23페이지 공인노무사 자격의 결격사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23페이지 박스를 보시면 지금 현행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확정된 후로부터 3년 그리고 집행유예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은 그 선고유예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가 제출한 안에서는 지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와 선고유예를 받은 기간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이 다른 입법례에 비추어서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24페이지 박스를 보시면 세무사법과 관세사법 등에서는 집행유예 선고받은 경우에는 1년 그리고 선고유예는 선고유예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이 부분을 다른 입법례와 같이할지 아니면 정부안과 같이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같이할지 위원님들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전문위원 수정의견은 따로 없어요?

○전문위원 최선영 저희가 봤을 때는 다른 입법례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같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선고유예는 선고유예기간으로 다른 입법례와 같이—세무사법, 관세사법 등에서

정한 기간과 같이—결격사유를 두는 것이 자격제도 간의 형평성 면에서 맞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자료 27페이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재등록 제한기간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28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공인노무사회에서는 제5조제2항 각호 중에 3호에서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등록을 거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내용은 제4조제2호 또는 3호에 따른 결격사유는 제외한다고 해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자에 대해서 이러한 3년 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결격사유에 있어서 이런 파산선고자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정안이 맞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자료 32페이지 공인노무사 연수교육 대상의 명확화 부분입니다.

공인노무사들이 교육을 받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현행 5조의2 제1항에서 ‘직무를 개시하려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격취소 후에 재등록을 한 공인노무사는 이 교육 대상인지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에서는 자격 취득 후에 직무를 처음 개시하는 경우에만 이 연수교육을 받도록 명확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자료 34페이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공인노무사 자격대여행위 등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두려는 것인데요.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인호 의원안과 송옥주 의원안에서는, 34페이지 하단 자료에 보시면 누구든지 공인노무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해서 세 가지 내용을 합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에서는 이 부분을 2항, 3항으로 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수정의견으로 한다는 거지?

○전문위원 최선영 예.

마지막 부분이 규제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료 40페이지 제27조의3(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보시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의3의 시험의

일부면제 기준 및 제12조의4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한 정부의 개정안은 시험의 일부면제 기준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제도를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국조실과 협의에 따라서 개정안이 제출되었다고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시험면제제도가 기회의 균등을 저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마저 제외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장 안호영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의견은 따로 없어요?

○전문위원 최선영 저희가 봤을 때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것이 제도는 존속을 하면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부분을 존속하는 것이라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임이자 위원 공무원이니까, 그렇지요?

○전문위원 최선영 예.

설명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공인노무사법까지 심사보고를 드렸고 다음은 근로복지기본법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 조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임이자 위원 법 1개 1개 끝내자고, 1개 1개.

○전문위원 최선영 그러실까요?

○김웅 위원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고 가시지요.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면 공인노무사법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고령자법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법률로 상향을 하면서 시행규칙에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위임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 조문 정비를 같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되는 대로 몇 차만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조항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니까 수용을 하는데 조문만 몇 개 고쳐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그다음에 공인노무사법은 저희들 낸 안도 있고 했는데 전문위원이 그냥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은 그대로 수정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정의견대로 따라가는데 몇 가지 좀 오픈된 상태로 말씀하신 조항이 있습니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둔 경우에 결격기간을 종전에 2년 되어 있던 것을 집행유예기간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한정된 안입니다. 그런데 자격별로 2년으로 둔 경우도 있고 세무사처럼 1년으로 한 경우도 있고 집행유예기간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자격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축하는 의미에서, 오히려 실행보다 더 길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집행유예기간으로 한정하자고 그랬는데 세무사 경우처럼 1년 정도로 한다면 지금보다는 단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수용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다른 내용은 이견이 없는데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자격시험 일부 면제하는 규정은 당초에 저희들 제안하는 취지가 그게 규제 대상이나 그래서 그것은 빼고서, 5년마다 재검토하는 데서 빼고 하자고 해서 국조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자격시험 관련해 가지고 관심도 있고 민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5년마다, 매 5년 그 부분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한다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 주시면 저희들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 지적한 대로.

다른 부분은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면 먼저 1항에 대해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고.

공인노무사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 3번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타 세무사법이나 관세사법 등에서 정한 것을 보게 되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짧아요. 이것은 좀 동일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아까 정부도 거기에 동의한다고 그랬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럼 됐고.

그다음에 규제 재검토 일부 해제 관련돼 가지고 어쨌든 이 부분이 제3조의3 시험의 일부면제 기준 관련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임이자 위원 그런데 또 국민적 감정은, 국민적 정서는 이게 기회균등을 저해한다라고 본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임이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상대적 평가도 아니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그렇게 크게 침해하나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하긴 공무원들한테 묻는다는 게 참 어폐가 있기는 하지만……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최현석 공인노무사법 3조의3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노사단체에서 10년 이상 업무를 했던 사람들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했고.

저희가 2011년부터 노동행정 경력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합격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타 자격사도 이것에 대해서 규제를 검토받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입법예고과정에서는 이렇게 올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은 유지하자 하는 얘기고 지금 정부는 이것을 삭제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최현석 예, 삭제하는 걸로 안을 냈었습니다.

○임이자 위원 안을 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 말이지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최현석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최근에 세무사 부분이나 등등 논란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고 하셔서 일단 존치하자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이것을 노무사법만 얘기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사도 그렇고 또……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그것은 각종 자격사 근거 법률에 여러 상임위원회에 걸쳐 있는 것에서 다 달리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각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자라고 해서 하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어느 한 자격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존치시켜 놓고 이게 정말로 국민정서에 맞지 않고 기회균등 보장을 저해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전체 다, 없애면 전체 다 같이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저희들 5년마다 예를 들면 이것 면제해 주는 시험과목이 적정하냐 아니냐, 누구한테 어느 정도로 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것을 재검토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되는 거고.

다만 각종 자격사 입법례에서 공인노무사처럼 이렇게 재검토하는 걸 규제 대상으로 넣어 놓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국조실에서. 그래서 노동부도 그러면 다른 데하고 맞춰 보자라고 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최근의 상황에 비춰 봐서 그냥 그대로 두자 그러면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아니, 좀 시끄러워지면 그때 가서 우리가 뺄게요.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따로 이견이 없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리가 된 겁니까?

○윤준병 위원 하나 확인 좀……

공인노무사 자격 결격사유에서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차이를 두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그렇게……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집행유예는 1년 추가해서……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윤준병 위원 오케이.

○김웅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집행유예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집행을 못 하게 되는 거고 선고유예는 선고유예기간 지나고 나면 유죄 선고가 되지 않는 것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이것을 똑같이 보는 것은 안 맞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면 공인노무사법 관련해서는 쟁점들이 있는 부분은 정리가 된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유예 부분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아까 재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이 정리가 된 겁니다.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선영 다음은 근로복지기본법 사항입니다.

자료 49페이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안은 정부안과 서일준 의원안인데요, 제11조(근로복지사업 추진 협의) 부분에서 현재 지자체가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고용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관할구역 안에서 해당 자치단체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리면 51페이지 부분의 이용우 의원안은 지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에 관한 특례조항에서 자기자본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로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개정하려는 부분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시행일 관련해서 지금 각 개정안이 서로 다른데 공포 후 1년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정부 측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전문위원 수정하신 의견대로 저희들 다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특별한 쟁점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선영 다음은 국가기술자격법입니다.

이 개정안도 56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지금 주무부장관이 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임이나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부분에서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려는 부분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저희들 개정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선영 다음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법입니다.

자료 60페이지를 봐 주시면 교육원의 사업에 관해서 지금 3호에서 청소년으로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청년을 추가하려는 부분입니다. 59페이지 자료 박스를 보시면 지금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은 24세 이하, 청년은 34세 이하이기 때문에 지원 확대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이게 저희들 정부안입니다. 그래서 청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을 개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해서 필요한 교육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견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다음 법안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선영 다음은 자료 65페이지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재심사위원회,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부분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부분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고 이 결격 사유 기간을 서로 차등을 두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지금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서 단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 전체 입법계획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이것은 일괄해서 입법하는 법제처의 법령 정비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우리 위원님들도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법안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선영** 다음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9페이지를 봐 주시면 이 개정안은 박대출 의원이 농가의 외국인근로자 인력부족 문제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먼저 첫 번째 사항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두면서 제8조의2에서 농업 부문 파견업 고용허가의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80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지역조합이나 지방 농촌진흥기관 등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81페이지 제4항을 보시면 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외국인근로자는 체류기간이 도과되면 출국 후에 일정 기간 경과 후 다시 재입국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난민법에 따른 인도적 체류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하지 않고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있게 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항은 제25조 부분인데요,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에 있어서 현재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의 사유와 횟수가 제한되고 있는데 3호 부분에서 농업 분야의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로서 업무량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사업으로 근로하는 것이 적당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에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3개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 측으로부터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79페이지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세 가지 안 전체적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농업 부문에 파견 허용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 외국인 고용법에 있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3~10년에 걸친 상시 고용을 전제로 하는 거고 일시적이거나 이런 사유에 의한 파견하고 익숙하지 않은 그런 제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농업 부문에 있어서는 저희 고용허가제 외에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계절근로제가 있습니다. 계절근로제가 최근에 요건을 완화해 가지고 일주일 단위로 그렇게 해서 올해 같으면 여기에 의원님 안에 제시한 그런 방향으로 계절근로를 통해서 농협에서 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각 농가에 파견하는 식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E-9, 외국인 고용허가제하고는 별도로 그쪽 트랙을 타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재입국 취업제한 특례는 한 가지는 이게 문제가 제기됐던 게 코로나 상황에서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못 들어오니까 그런데 지금은 재입국이 정상화되고 법적인 제한은 다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의원님 안에 포함돼 있는 난민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별도로 G-1-6 비자가 나가기 때문에, 취업할 수 있는 비자가 나가기 때문에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이렇게 제도로 할 필요도 없고, 특히 5항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조항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업장 변경제한은 지금 25조 1항 3호를 별도로 신설했는데 2호에 의해 가지고 휴업, 폐업 또는 농한기처럼 업무량이 대폭 감소하였을 때 그런 경우에 횟수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저희들이 실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호 신설하는 거는 별도로 개정할 실익이 없다 하는 거고.

특히 사업주 동의 없이 하는 부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업주의 동의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오히려 나중에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강제근로 등 인권침해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이 안에 대해서 정부의 의견도 있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법무부라든가 다른 정부부처하고 좀 더 협의될 부분도 있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윤미향 위원님.

○**윤미향 위원** 저도 이 농업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인노동자 파견의 허용 및 사업장 변경 제한완화조치는 사실은 공감을 하지만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전적으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밝힌 입장처럼 법적으로도 조금, 법리적으로도 적절한지 또 뿐만 아니라 외국인 고용법 제정취지

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김웅 위원님.

○김웅 위원 지금 법무부하고 농림부에서 계절 근로제를 하고는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기간에 있었을 때 좀 유연해져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 지금 농촌의 과수원이나 아니면 기간이 딱 정해져서 수확을 해야 되는 농업 분야에 있었을 때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정말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거의 망하는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위낙 절박하기 때문에 이런 법안까지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법무부, 농림부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3개가 다 관할이 돼 있어서 보면 어느 정도 약간 떠넘기는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서 뭔가 대안을 만들어 내야 될 것 같고 계절근로제만 가지고도 사실 전남 같은 데서도 조금 달리 변형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좀, 이걸 그냥 파기를 시킬 게 아니고 좀 논의를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이자 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농촌, 어촌 이런 데는 방금 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김웅 위원님은 농촌 국회의원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농촌은 진짜, 어촌도 마찬가지겠지만 외국인노동자 없으면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농촌의 실정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법무부, 농림부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청회를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다 지방선거에 이것 공약을 하세요, 그냥. 공약하고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이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지요?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 처리 자체는 보류해서 좀 더 논의를 하고 그것과 별개로 지금 농촌 혹은 어촌의 외국인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공청회를 열든지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 12, 13항은 보류해서 더 논의하고요.

14항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선영 14항 외교법 윤미향 의원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법률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항에 대한 조문대비표는 87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개정안의 두 번째 내용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처벌받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92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20조에서 직업안전기관의 장은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산안법 167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산안법 167조 제1항의 규정이 91페이지 박스 표시를 보시면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측면에서 필요하기는 한데 처벌을 받은 경우로 하기보다는, 이 법률이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내국인근로자는 제외하고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어떨까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지정 및 지정취소 근거조항 상향하는 부분은 저희도 찬성을 하고 그다음에……

○소위원장 안호영 그거는 이의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그다음에 근로자 사망 시 고용제한 부분은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 외국인근로자 사망사고로 한정해 주시면 어떨지, 그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산재 사망사고가 난 사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외국인근로자를 쓸 수 없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사실상은 저희들이 점수제로 이렇게 배점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금의 제한은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니까 말씀취지가 외국인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 경우로 좀 제한해서 적용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그런 뜻입니다.

○윤준병 위원 동의합니다.

○윤미향 위원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법안 15항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선영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앞서 논의하신 박대출 의원안 외고법과 동일한 취지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6항부터 18항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윤준병 의원, 임종성 의원, 임의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임종성 의원과 임의자 의원께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노무제공자의 개념을 신설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노무제공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안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개념을 두면서 산재보험 적용제외와 관련된 부분만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법률안의 발의 배경과 주요 내용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재보상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 전속성 요건을 두고 있는데 전속성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전속성 규정으로 인해서 복수의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주된, 주로 하나의 사업이라는 게 없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을 못 받고 있고 또 전속성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주된사업장이 아닌 보조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 적용이 안 되고 있는 미비점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전속성 요건 폐지를 통해서 적용범위를 확대하려는 데 주요 방향이 있습니다. 예시사항을 보시면 퀵서비스기사의 경우에 하나에 전속된 기사와 달리 여러 개의 업체를 공유하는 기사는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효과는 101페이지 하

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부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총 8개의 사항이 있는데 먼저 간단하게 입법 형식에 관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면 노무제공자와 관련된 장을 신설하면서 임종성 의원안에서는 제4장의2로, 임의자 의원안에서는 제3장의4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 산재보험법에서 각종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장의4로 이 조문을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요 내용으로서 노무제공자의 정의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자료 상단을 보시면 현재 산재보상보험법 제125조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 특례조항을 삭제하고 노무제공자의 개념을 새롭게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4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주로 하나의 사업’이라는 표현이 노무제공자에는 삭제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종 선정기준에 있어서 현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으로 하고 있는데 노무제공자에 있어서는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로 해서 적용 확대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직종 선정기준에 있어서 임종성 의원안에서는 종사자 규모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임의자 의원안에서는 이 기준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노무제공 방식에 따른 구분에 있어서 임종성 의원안과 임의자 의원안에 차이가 있는데 임종성 의원안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나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는 차이가 있고 반면에 임의자 의원안에서는 사업주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에서는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나에서는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산재보험법이 사업주와 종사자 간의 관계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임이자 의원안으로 정리하는 것이 현행 체계에는 더 맞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서 적용제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행과 관련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행 특고의 경우에는 부상 등의 사유가 있으면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이자 의원안에서는 이 부분을 폐지하고 대신에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일부 직종은 휴업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도록 휴업신고제도를 두었고 휴업신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준병 의원안에서는 적용제외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동일한데 휴업 시에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차이점이 있고 임종성 의원안은 적용제외를 일시에 폐지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05페이지 하단의 소득기준 적용제외규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경영계나 플랫폼업계에서는 단기·저소득·부업 종사자에 대해서 적용제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월 소득 80만 원 미만 노무제공자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식을 산재에도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세 번째 사항으로 보험급여의 산정과 보험급여의 지급 부분입니다.

현행 특고 같은 경우에는 고용부장관이 기준보수를 고시하고 이에 따라서 보험급여를 산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보수의 개념을 새롭게 만들고 여러 사업장에 근무하기 때문에 재해발생 사업자가 아닌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까지 다 합산할 수 있도록 평균보수라는 개념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었고 이 개정안의 차이는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임이자 의원안과 임종성 의원안의 차이가 10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노무제공 대가로 받은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등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임이자 의원안에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라고 해서 이 법

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영업이나 다른 활동으로 받는 소득은 여기에 합산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이자 의원안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험급여의 지급과 관련해서는 106페이지 하단을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 제도가 변경이 되면 사업자가 월 보수액을 신고하고 여기에 따라서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됐는데 복수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보수의 신고가 일부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신고된 보수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노무제공자가 보험료에 대해서 정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복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의 특성상 이렇게 정정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정정청구의 요건에 대해서 개정안에서는 '사실과 다른 경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하여 실제 평균보수와 다르게 산정된 경우'로 보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플랫폼 노동 관련 사항으로 플랫폼에 관한 개념 정의 부분과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 각종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주요 개정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임이자 의원안과 임종성 의원안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정의규정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그리고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는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이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의 현실적인 예를 보시면, 107페이지 상단 오른쪽 부분인데요, 예컨대 개별 배달대행업체가 노무제공자를 채용해서 배달대행 프로그램의 하나인 '요기요'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 배달근로자 노무제공자를 채용한 배달대행업체가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되고 요기요는 플랫폼 운영자가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상은 동일한데 입법 형식에 있어서 임이자 의원안은 그 용어를 각각 필요 조문에서 분산해

서 정리하고 임종성 의원안에서는 하나의 조문에서 정리하고 있어서 체계상은 일괄해서 정리하는 임종성 의원안이 보다 편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107페이지 하단은 플랫폼 운영자한테 어떠한 의무를 둘 것인가 문제인데요. 공단이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 각종 필요한 내용들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두는 것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입법 형식에 있어서 임이자 의원안은 이것을 사업주의 조력 조문에 두고 있고 임종성 의원안은 플랫폼 운영자의 특례조항으로 두고 있는데 플랫폼 운영자가 사업자는 아니기 때문에 플랫폼 운영자의 특례로 하는 임종성 의원안이 체계상 보다 맞을 것으로 보았고 입법 형식도 고용보험법에서는 플랫폼 운영자의 특례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외 108페이지 상단에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휴업급여 최저기준, 부분휴업급여 산정방식 변경의 부분들은 노무제공자에 대해서 근로자와 다른 특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8페이지 부칙 시행일 부분에서 윤준병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 임이자·임종성 의원안은 공포 후 1년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보험행정 측면에서 시행일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 박스 보험급여 산정기준 관련된 부분에는 신법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으로 이 부분도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 하나는 108페이지 하단에 있는 특례규정인데요. 이 특례규정은 임종성 의원안은 없고 임이자 의원안에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고 자세한 부분은 109페이지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보시면 왼쪽 부분에 ‘부칙 제8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먼저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및 보험급여 지급 등의 특례’라고 해서 ‘중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 법 공포 이후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날의 전날, 즉 시행일 전일까지 주된 사업 외의 사업장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중전의 규정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라고 해서 시행일 전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이 되면 이 부분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보신 것처럼, 이 개정안이 지금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게 주요 방향인데 그러다 보니까 법 시행 전에는 이 부분이 유지돼서 보조사업장에 근무하는 특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커버하지 못하는 그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특례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호의 필요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전에 산재보험료를 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범위만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 정부 측으로부터 의견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부처에서는 임이자 의원안과 같은 의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저희도 여기 103페이지에 있는 표를 가지고 의견을 특별히 언급할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볼 때는 임종성 의원님 안이 작년엔 나왔고 의원님 안이 발의된 이후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던 부분을 반영해서 임이자 의원님 안이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임이자 의원님 찬성의견이 상대적으로 아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별도 장을 신설하되 어디에 두느냐 하는 부분은 전문위원 의견과 같이 제3장(보험급여) 다음에 보면 제3장의2, 제3장의3 하는 방식으로 특례규정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3장의4로 가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전속성 요건 삭제, 노무제공 성격은 그대로고 3번의 직종 선정기준에 종사자 규모가 어떻게 보면은 보호의 필요성에 포함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종사자가 굉장히 많은 직종은 우선적인 관심과 보호의 대상이 된다 그런 취지에서 임종성 의원님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종사자의 규모가 적으면 보호 안 해도 된다는 취지나 또 이런 논의도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빼는 게 어떨까느냐 하는 게 임이자 의원님 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쪽으로 하더라도 직종 선정은 저희들이 필요한 노사와의 논의를 통해서 업계 논의, 노동조합과의 논의, 특고단체와의 논의를 통해서 선정해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노무제공 방식에 따른 구분은 임종성 의원님 안은 온라인 플랫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고 임이자 의원님 안은 노무제공 방식을 두고서 사업주로부터 직접 하느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하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임이자 의원님 안이 일견 조금 나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105페이지의 적용제외 신청제도는 재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임의로 적용제외 신청하던 것을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이미 제도가 개선이 되어 있고.

임종성 의원님 안은 단계적으로 폐지하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윤준병 의원님 안은 그 당시에 도 제 기억으로 적용제외를 당장 폐지하자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납부 유예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저희들 지금 생각에는 전속성이 폐지된 마당에, 저희들이 실소득 내지 실보수를 기준으로 해서 특고 노무제공자들의 취업상태, 소득활동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제외는 차제에 폐지하고, 그러면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소득 파악이 실소득 내지 실보수 파악이 힘든 직종의 경우에는 신고를 받아서 보험료 징수 납부를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그 외의 직종은 저희들이 실보수 소득활동을 그대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활동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징수를 안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이자 의원님 안으로 가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윤준병 의원님은 당시에 이게 굉장히 진전된 안이나, 보험료 납부유예제도가 있는데 다만 지금 입장에서 보면 납부유예된 것은 유예된 것 모았다가 나중에 다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실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면제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이자 의원님 안이 지금 시점에서 논의를 제일 종합해서 조금 진전된 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소득기준 적용제외규정이 부분은 고용보험은 8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밑의 경우에는 실업이라고 볼 수 있느냐 또는 취업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논쟁이 되는데 산재보험은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어떤 경우에도, 아주 짧은 기간에도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

문에 산재보험은 소득기준으로 적용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호 대상에는 포함하되 아주 소득이 낮은, 경영계나 플랫폼 업계가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험료 감면 근거조항을 두기 때문에 보험료 감면제도를 통해서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에 대한, 소득은 낮아도 보험료는 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저희들이 해소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험급여 산정기준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이 조항을 넣는 임이자 의원님 안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평균보수는 두 분 의원님 안이 똑같고, 그다음에 보험급여 지급에 있어서 용어 수정하는 것은 전문위원 의견대로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7페이지의 플랫폼 노동 정의규정, 일괄해서 할 거냐 분산해서 할 거냐 하는데 일괄해서 하는 게 좀 더 보기에 낫다 하는 전문위원님 의견이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자료제공의무를 제116조에 포함해서 일괄해서 할 거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특례조항 신설할 경우에 신설 조항이 과태료하고 바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앞의 116조(사업주의 조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과태료와 연계되지 않은 선언적인 의무조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그냥 임종성 의원님 안대로 이렇게 가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저희들이 근로자 기준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부분은 따로 정하고, 그다음에 휴업급여 최저기준 이 부분은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로자 휴업급여는 휴업급여가 상당히 높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휴업급여 산정방식은 감액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부칙은 통상적인 입법례는 공포 후 1년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대국민 홍보 측면도 감안해 가지고 1월 1일 또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부분은 7월 1일 이렇게 맞춰서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미구에, 올해 정기국회 이전에 본회의 통과된다는 걸 전제로 그냥 23년 7월 1일로 해 주시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준비하거나 홍보하는 데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특례규정은 법 시행 전이라도, 공포 이후에 시행 전이라도 보조사업장 제외에 대해서는 이분들

이 이미 보험료도 납부했기 때문에 보호하는 규정을, 적용례를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문위원이 주요 쟁점사항에 제안하신…… 이게 임이자 의원님 안 부칙에 있는 조항인데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전문위원 의견과 정부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 제가……

○소위원장 안호영 예,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 지금 특고노동자들뿐만 아니고 플랫폼노동자들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적용시키자는 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여야 위원님들 다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내용들이 복잡하고 임이자 의원안, 임종성 의원안 또 윤준병 의원안, 세 안들이 있어서 지금 정부가 이 부분에서는 이 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 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통과시킨다는 전제하에 이 부분들 정리를 새로 짚아서, 다음 법안 하기 전까지 새로 한번 짚 검토를 시켜 줘서 그다음에 이걸 통과시키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너무 복잡해, 서로 안들이 뒤섞여 가지고.

그래서 다음 소위 열면 무조건 통과시키는데 그 전에 이걸 하나로 짚 정리 좀 해 달라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또 다른 의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보니까 복잡하긴 한데 전문위원께서 의견을 정리해 줬고 또 그걸 정부에서 쪽 정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전문위원실하고 저희들 간에는 협의해서 사실은 단일안으로 지금 마련이,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단일안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위원님들 보시기에 한번에 파악이 안 되셨을 수가 있으니까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음에 한 번 더 보시고 논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장철민 위원 질문사항이 좀 있는데요.

어차피 앞에 노무제공자 정의규정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지정할 때도 대통령령으로 정

하게 되기도 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요건들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 노무제공 성격 부분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노무제공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실익이? 나중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케이스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최현석 대표적으로 간병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걸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많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장철민 위원 예, 예를 들면 가사 관련해서도 그렇고.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최현석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통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래서 이번에 정의할 때는 이 부분까지 꼭 넣어야 되는 건가 싶은 의문사항이 들어서, 어차피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면 이것은 약간 스터디가 된 이후에 이렇게 명확히 하든 말든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한다’ 그러면 간병인 같은 경우에 또는 가사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배제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 그분들을 다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하는 조항을 없애고, 어차피 직종별로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일단 오픈된 상태로 그냥 가는 게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에도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인데 나중에 케이스별로 저희가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점이 보이고……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최현석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인 간 계약에 대해서까지 전부다, 안 되면 일단 명확하게 하고 필요한 부분을 점진적으로 넓혀 나가는 게 좋다는 것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는 게 실무진의 의견입니다.

○장철민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사인 간 계약, 예를 들면 플랫폼 같은 것들을 통하지 않는 사인

간 계약은 당연히 빼는 게 맞는데 플랫폼을 통하는데 사실은 약간 사인 간 계약처럼 돼 있는 느낌들에 있어서는, 밑에 플랫폼을 통해서 하는 경우는 또 노무제공자가 범주로 들어오고 저희가 지금 하는 방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약간 충돌될 수도 있는 케이스가 있지 않을까 싶은 의문이 든 거예요, 지금 이 내용 보면서. 그래서 굳이……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가사종사자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플랫폼을 통하면 플랫폼 사업자……

○**장철민 위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플랫폼 운영자가 곧 사업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최현석** 그런 부분은 어쨌든 보호범위 안에 우리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보호범위 안으로 인입시키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실질적인 거래관계가 파악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 그 원칙을 명확하게 하되 이후에 조금 대안들을 찾아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장철민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밑에 내용들이 있고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데 굳이 충돌될 수 있는 케이스에, 그러니까 혹시나 예측 못한 케이스가 나오는데 이것 넣어 놓으면……

진짜 의문입니다. 이게 문제가 오히려 될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소위원장 안호영**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비) 위원** 제가 조금 늦게 왔습니다.

사실 가사노동자 고용개선에 대한 법이 6월부터 발효가 돼서 시행이 될 거고 사인 간의 계약도 물론 있겠지만 점점 하나의 산업으로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당연히 이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는 기왕에 우리가 전국민 고용보험, 전국민 산재보험 이것 힘들고 어렵고, 특히나 특고노동자들과 관련해서 여야가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안을 내셨고 또 노동부도 그렇고 환노위 전문위원도 그렇고 안이 마련돼 있다 하니 이것들은 정리된 것을 다른 데로 옮기지 마시고 이따 마무리하시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힘들게 오랜만에 소위를 잡았는데 지방선거 앞두고, 물론 또 하시는 하겠지만 시간들이 여의치 않으실 것 같아서 오늘 기왕에 말씀 나오신 김에 아까 얘기하셨던 우려되는 것

들 또 이견이 그런데 그닥 그렇게……

윤준병 위원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순서를 바꿔서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하시는 게, 그렇게 하시지요.

○**임이자 위원** 그 말씀에 백번 동의하면서, 사실 제가 인수위 간사를 하면서 라이더나, 라이더노조뿐만 아니고 또 쿠팡이츠인가 사 측 그쪽하고 그다음에 국토부 이렇게 쪽 해서 한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도 초청해서 했는데 일단은 사 측도 그렇게 반대하는 의사는 아닙니다. 전속성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들을 하세요.

단지 본 위원이 조금 우려하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통과시키는 것은 다 전제로 하고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자칫 우리가 법을 만들면서 또 하나의 형평성이라든가 또 하나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어서 만들어 놓은 안이 있으면 한 번 더 보고 또 위원님들이 꼼꼼히 체크를 해서 시간을 가지고 또 보시고 나서 한 번 더 체크하고 난 뒤에 다음 소위 때는 통과시키자라고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하나 또 짚기 시작하면 또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접어 놓고 다른 것부터 통과시키고 나서 시간 나면 또 통과하고……

○**소위원장 안호영** 잠깐만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 아까 쪽 전문위원 보고하고 차관님 의견 중에서 논의가 정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공포 후에 법 시행 전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특고가 보조사업장에서 일하는 도중에 발생한 죄에 대해서 산재보험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아까 차관님 말씀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과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이수진(비)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니까 산재보험을 일단 적용을 하자는 그런 취지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보조사업장, 저희가 지금도 해석상의 논란이 되고 최근의 사례도 여러 가지 보조사업장에서의 재해이기 때문에 보상

을 못 받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법이 만약에 입법이 되어서 공포가 되면 시행 유예기간이 1년이나 되기 때문에 1년 기간 동안의 보조사업장 재해는 이 법에 의해서 보호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예, 그런 취지의 말씀인데 다른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조금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순서를 바꿔서 다음 안을 논의 좀 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래도 가급적 통과시키시지요.

○이수진(비) 위원 그래요, 오늘 해요, 오늘. 이따 이것은 정회시간에 논의하시고.

○윤준병 위원 대신에 지금 얘기된 조문 있잖아요, 정리해서 마지막에 한번 보고 의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소위원장 안호영 그리고 다음 법안이 보험료 징수법이거든요. 이것은 절차법이어서 같이 보고를 해 주시고 의견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선영 보험료징수법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72페이지부터 개정안의 주요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이 개정안이 적용범위를 확대하면서 실보수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그런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고용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를 곱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이 부분들을 다 신고하도록 하는 체계로 변환되게 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무제공 특성에 따라서 소득 확인이 어려운 직종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기준보수를 적용하는 그 차이점이 있고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하단 부분은 산재보험료를 심의 근거 마련인데요, 노무제공자의 특성에 맞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에서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려는 것으로 이 부분도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173페이지 상단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조금 논의하셔야 되는 사항인데 현행 특고에 대해서는 지금 임종성 의원안같이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료를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하되 사용종

속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 전액부담 직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단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임이자 의원안에서는 이 단서규정을 삭제해서 원칙적으로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을 제시한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73페이지 오른쪽 표를 보시면 논의 필요사항으로 사업주 전액부담 직종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이 단서규정을 삭제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데 그 필요성은 직종 간의 형평성이나 제도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용종속관계 등을 고려해서 전액부담 직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사실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거에 따르면 삭제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지금 이 현행 특고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진행 중입니다. 입법부작위에 대해서, 대통령령 부작위에 대해서. 그래서 위임규정을 지금 삭제를 한다면 이 사업주 전액부담 가능성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서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그러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판단과 정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3번부터 다시 이어서 설명드리면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완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단기·저소득 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는 부분으로 특이사항이 없고 휴업에 신고의무 부여하는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적용제외 직종에 대한 폐지 부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의 플랫폼 운영자에 관한 특례 부분에서 플랫폼 운영자가 보험관계에 관한 사항이나 월 보수액을 신고하도록 하는 부분들도 보험행정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다음에 플랫폼 운영자가 신고자료를 보관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임이자 의원안은 보관기간을 5년으로, 임종성 의원안은 3년으로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정해야 되는데 정부 측에서는 보험급여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하단 부분도 조금 논의가 필요한데 임이자 의원안에서 지금 플랫폼 운영자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정산하기 위한 전용계좌를 만들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산재보험료 납부나 정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데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적정할지 필요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 정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만든 수정의견안은 전용계좌라는 용어를 이 산재 보험료징수법에서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 관리해야 한다’는 문구 정도로 수정을 하고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는 것으로 지금 의견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75페이지 부분은 여섯 번째 내용으로 공단이 제삼자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건데요. 공단이 노무제공자의 보험 제공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예컨대 보험회사 등에 대해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부분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보험회사에 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기사의 정보 등을 요청하는 그런 사례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둔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보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대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라고 해서 너무 포괄적이어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 보험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내용으로서’ 해서 조금 한정하는 식으로 조문을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시행일과 관련되는 사항은 지금 정부 측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3년 7월 1일 부로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수법과 관련해서는 173페이지 상단 부분, 단서의 삭제 여부에 대해서 토론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주 전액부담, 이게 참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솔직하게 저희들이 시행령을 만들지 못하게 사용종속의 정도를 직종별로 차등화해서 특정 직종에 한해서 하자는 게, 저희들도 최초에는 그게 가능한 그림이라고 봤는데 그게 여러 가지 직종별 형평성에 맞나 그리고 제대로 했나 하는 그런 문제까지 실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임이자 의원님 것처럼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그냥 절반씩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만 여기 논의 필요 사항에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한 대로 헌법소원 진

행 중인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문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또 훈시하실 부분도 있는데 그 가능성조차 배제하고 입법적으로 하는 게 타당하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현행 규정으로 두고 가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해 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지켜보고서 판단을 해 보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보험료 감면 대상은, 그 밑에 있는 3번은 노무제공자 외에 사업주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4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적용제외 폐지하면서 휴업 등 신고하고 그다음에 보험료 면제하고 이게 같이 가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74페이지 3번의 신고자료 보관의무, 3년이나 5년이나 이 문제인데 3년은 아마 보험료 징수 측면에서의 저희들 그게 3년이기 때문에 3년으로 했는데 보험급여 측면에서는 보험급여 시효가 최대 5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년간 보관하는 것으로, 사업주에게는 조금 더 부담이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해 보이고.

174페이지 마지막에 플랫폼 전용계좌, 산재보험료 납부·정산을 위한 전용계좌 부분은 이게 전용계좌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마련,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로 강제하는 것은 플랫폼 운영자한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냐 하는 판단에서 별도 관리해야 된다고 하고 과태료 부과 안 하는 대신에 저희가 비용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유도하는 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으로 이해하고 그런 제안이 시라면 저희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그 의미가 없잖아, 하는 의미.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마지막의 제삼자, 이렇게 제한하자는 수정의견은, 그러니까 제공해야 되는 자료의 성격,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은 저희들 수용할 수 있고 부칙조항은 말씀드린 대로 7월 1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플랫폼 운영자의 산재보험료 납부·정산과 관련해서 전용계좌를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선언적인 규정으로 두는 것, 나는 이것은 원

래 두고자 하는 취지에 배치된다고 생각해요.

플랫폼 운영자들이 요새 큰손이 돼 가지고 온갖 법, 여러 가지 기율어진 운동장을 심화시키고 있는 과정인데 오히려 이것을 차제에 잘 정리해서 운영이 제대로 의무화될 수 있도록 체계화를 해 줘야지. 나는 이것 전용계좌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의무 이행이 안 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까지 해서 차제에 제도화를 제대로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임이자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것 앙꼬 없는 찐빵이지 뭐,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의견대로 하면 되지요.

○임이자 위원 그래서 지금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안호영 그렇지요.

○임이자 위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서…… 이것은 거의 뭐 별 저것은 없는 것 같아요.

○윤준병 위원 한번 다 정리해서 뒤에 할 때 다시 한번 리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임이자 위원 다만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부담 방식에 관련해서는 어차피 대령을 우리가 유지해서 가자, 거기에 대해서는 정해 놓지는 않았지만 유지해서 가 가지고 길은 터 놓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는 그것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다음에 앙꼬 없는 찐빵은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하고……

○윤준병 위원 예, 나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면 절차법, 징수법 관련해서는 아까 잠깐 쟁점으로 돼 있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부담 방식에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직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고 현재 시행령이 미제정돼 있는 상태인데 우선은 이렇게 좀 하자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헌법재판소 결정 보고 나서 나중에 고치더라도요.

○임이자 위원 그것은 현소 진행 중이니까.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전용계좌 별도로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의무화하고 과태료 신설하고.

○장철민 위원 한마디만 딱 드리고 싶은 게 현재 판결을 봐야 돼서라기보다 제가 보기에 이 것 대령 단서규정 삭제하는 게 우리 원칙을 훼손하는 일 같은 느낌이에요.

원칙을 훼손하는 일같이 느껴지는 게……

○임이자 위원 뭐가요?

○장철민 위원 그러니까 원래 산재라고 하는 게 대체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게 맞는 거고……

○임이자 위원 사업주가 다 100% 하는 건데.

○장철민 위원 사실은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2분의 1씩 하는 건데 이 대령을 아예 없애 버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칙 자체가 혼란스러워지는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시행령이 잘 안 나오고 직종을 찾기가 어렵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사업주가 전액부담을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사업주가 전액부담을 하는 원칙을 가져 가려면 이게 남겨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현재 판결, 현재 결정과 상관없이 이것은 그냥 남겨 놓는 게 맞다라는 게……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장철민 위원 우리의 입법, 뭔가 국회에서의 취지로 남겨 놓는 게……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장철민 위원 예. 그래서 나중에 논의하자 이런 것보다……

○임이자 위원 아니아니, 아까 얘기했어요. 정리했어요, 그대로 유지하고 가자라고.

○이수진(비) 위원 장철민 위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장철민 위원 취지를 정확하게 남겨 놓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면 아까 산재보험법하고 징수법하고 2개가 연관돼 있으니, 전문위원 의견하고 정부 측 의견이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정부 측 의견은 임이자 간사님께서 정리했던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정리했고 논의가 있었던 쟁점이 있었던 부분들은 위원님들 의견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전문위원께서 정리를 하셔서 이따가 다시 논의해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지요.

○**윤준병 위원** 마무리한 다음에 리뷰 한번 하고 의결하자고.

○**소위원장 안호영** 그래요.

다음 법안 좀 보고해 주십시오, 고용보험법.

○**전문위원 최선영** 고용보험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권부터 새로 시작하는 내용인데요, 자료 2권의 첫 번째 사항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금 안호영 의원안과 윤준병 의원안이 각각 있고, 먼저 안호영 의원안부터 자료 3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출산전후급여나 유산·사산급여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4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 77조의4에서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를 규정하면서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안호영 의원안에서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도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고.

개정안의 목적에 대해서는 3페이지 박스의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술인 A와 B가 있는 경우에 10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은 동일하더라도 현재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지금 계약이 종료되어 있으면 출산전후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이고, 아무래도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가 고용의 안정성이 조금 더 낮은 점이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였던 경우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은 4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윤준병 의원께서 발의하신 외국인인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범위 마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이라고 제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윤준병 의원안에서는 ‘외국인인 예술인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한해 이 장을 적용한다’고 해서 그 적용범위를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외국인인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인 경우에도 적용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그것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개정으로 보여집니다만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6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하단 ‘다만’ 부분에 있는 내용인데요. 외국인인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이 개정안 시행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의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들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종전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개정안으로 인해서 가입 대상자가 아니게 되는 경우에 보험료의 반환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과 협의를 진행했고 아직까지 조문은 완성하지 못한 단계입니다.

아울러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지금 윤준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과 더불어서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의 범위, 이중취득 제한 등을 반영하는 내용이 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다 보고했나요?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앞부분의 출산전후휴가는 필요한 사항이고,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기에 정부안이 제출되어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 저도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잘……

그렇기 때문에 10조의2 규정을 개정하면서 다른 부분도 일괄해서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기다렸다 함께 논의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저희들 실무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개정안 시행 전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외국인이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를 행정부에서 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개정안 시행 이후에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은 보험료를 반환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리가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는 와중인데 기존에 가입된 사람이 빠진다고 그러거나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이 행정력입니까? 이런 얘기를 고용노동부가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입법적인 내용에……

한번 설명 좀 해 줘 봐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위원님, 우리 담당 국장입니다.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입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에 있는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든지 그다음에 15세 미만 예술인도 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가입이 돼 있는데 문제는 15세 미만 같은 경우는, 현재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강제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논의는 정부 내에서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학업권이라든지 그다음에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등등을 고려해서 15세 이상만 당연가입을 하고 그 밑에는 임의가입을 하겠다는 게 정부안에 있고 의원님 발의안에도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금 당연적용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 없이 다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로자 같은 경우가 출입, 체류자격에 따라 가지고 당연가입 또는 적용배제 또는 임의가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동일하게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이번 법안의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전혀 이견이 없고요.

다만 아까 전문위원실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이 시행돼 버리면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일부는 해지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 환급이라든지 또 이분들이 보상을 받았으면 그것에 대한 반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관한 부칙조항을 지금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조율 중이라는 말씀을 아까 전문위원이 드린 것 같습니다.

○**윤준병 위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현재 이 규정은 임의적으로 예전 다른 규정에 의해서 산재보험·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가입된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있는데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더 의무화해서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잖아요.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김성호** 정확히 말씀드리면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라기보다는 이미 다 확대가 돼 있는데 외국인이라든지 15세 미

만자들에게는 당연가입의 범위를 조금 제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준병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내용을 원래 다른 법상 하고 있는데 지금 당연가입과 관련된 내용을 의무화시키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제가 지금 국장 말을 이해한 것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 체류자격에 따라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하자, 그다음에 연령제한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연령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게 발의의 배경이고.

그렇게 해서 입법을 하다 보면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 외국인이든 15세 미만자 중에서 새로운 개정안에 따라서 피보험자격이 상실되는 그런 분들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 게 타당하겠느냐. 원칙적으로 가입을 해서 탈퇴하는 쪽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자격이 없으니까 신청을 원하는 사람을 받아서 계속 유지시켜 주는 부분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실하고 저희 실무자들하고 아직 문구가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 지난주에 부랴부랴 하고 있는데 조항들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고, 정부안이 있는데 정부안은 지금 안 올라왔습니다. 소위에 회부가 안 돼 있는데 정부안하고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말끔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다,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면 지금 당장 여기에서 이렇게 결론 내는 것보다 우선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윤준병 위원** 그래요.

○**임이자 위원** 아니, 조금 이따가가 아니고 오늘은 안 돼요. 이 부분을 오늘 당장은 좀 하기 어렵고 좀 더 고민을 해 보시자고요.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니까 우선 잠깐 보류해 났다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윤준병 위원** 설명을 한번 들어 보고요. 이해가 되면 보류하고……

○**소위원장 안호영** 설명이 안 되면 다음 소위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우선 당장은 넘어가시지요. 이따가 따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 법안.

○**전문위원 최선영** 다음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 징수법 내용입니다.

자료 15페이지부터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보험료 독촉고지에 대한 전자송달 근거를 마련하는 임이자·고영인 의원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이 보험료나 징수금을 납입고지할 때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데 독촉에 대해서는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촉에 대해서도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비용절감 차원에서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조문자료는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취소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조문자료 22페이지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3조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을 두면서 현행은 33조 제5항에서 공단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해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개정안에서는 각호의 사유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부분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과 관련된 재인가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들이 인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가취소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폐지를 하거나 인가취소를 받더라도 바로 다시 재인가를 받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고 폐지일 또는 인가취소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재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마는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적용례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 적용례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 29페이지 하단 부칙 제2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3조 제6항의 개정 규정이 인가의 제한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이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업무가 폐지되거나 인가가 취소된 보험사무대행기관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견 말씀드리면 고용보험 징수법 부분

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 하는데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안 밝히신 게, 제가 못 들어서 그런지 여기에 독촉고지는 건강보험공단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페이지 보시면 임이자·고영인 의원님 안 중에서 임이자 의원님 안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 한정하는 게 맞는 것 같고.

19페이지의 시행일 관련해서는 이게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포 후 6개월로 수정을 해 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가취소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김도읍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자구를 조금 수정해야 된다는 전문위원실 의견 그대로 동의합니다.

재인가 제한하는 경우에도 전문위원님이 조금 전에 29페이지 하단의 부칙 2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수진(비) 위원 아까 정부에서 출산급여 관련해서 답변 주셨었나요, 출산급여 관련해서 피보험자였던 것도 적용한다 그것 아까 말씀 주셨나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여기 수정의견에는 나와 있는데 29페이지에 보시면 제2조 위에 시행일 관련해서는 공포 후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이 아니고 6개월인 것 위원님께서 기억을 해 주십사 합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니까 수정의견 부칙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소위원장 안호영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법안.

○전문위원 최선영 다음은 산안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산안법 개정안에 대해서 31페이지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박대수 의원, 윤미향 의원, 김성원 의원, 윤준병 의원, 장철민 의원, 임종성 의원이

발의한 내용인데요, 위의 세 분께서 발의한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대수 의원안은 기상여건 위험에 대해서 사업주가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고 윤미향 의원안은 기상상황이 안 좋을 때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작업중지권과 조치결과 보고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성원 의원안은 기상조건 위험이 있는 경우에 지자체장이나 고용부 장관이 작업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해서 감소한 임금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그 부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윤준병 의원안은 산업안전 감독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장철민 의원안은 산업재해 발생건수 계시를 의무화하는 내용 그리고 임종성 의원안은 폭언 등을 하는 고객과 근로자의 분리조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박대수 의원안, 윤미향 의원안, 김성원 의원안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조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윤준병 의원안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부분입니다.

윤준병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을 감독하기 위해서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 산업안전 부분에도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의 내용을 보면, 51페이지 상단 부분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용부가 구축한 시스템이 사건처리 결과만을 관리하고 있어서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준병 의원안에서는 산업안전 관련 사건,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규모 및 지역 등에 따라서 구분해서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을 조금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조문상 몇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봤는데요.

조문자료를 보시면 54페이지에서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이라는 조항에서 고용부 장관은 산업안전 분야 감독 등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각호에서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으로 두는 경우에 1, 2, 3 부분이 혹시 필요에 따라 하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까지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점이 있을 수 있어서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재량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떨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과 정보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연계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제시한 보완의견 외에 부처에서 제시한 보완의견은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 측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전문위원님이 앞부분 설명을 너무 간단하게 해 가지고……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니까 아까 세 부분, 김성원 의원님, 윤미향 의원님, 박대수 의원님 안의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거기 안의 내용이 다른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윤미향 의원님 안하고 박대수 의원님 안의 공통되는 부분들이 최근의 기상이변이지요. 폭염이나 한파 또는 미세먼지 등 기상여건에 의한 위험을 윤미향 의원님은 안전조치의 대상으로 그다음에 박대수 의원님은 보건조치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실무 의견은 현행법에서 고온, 저온, 분진 이런 것을 건강장해 예방조치 그러니까 보건상의 조치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을 둘 실익이 있겠느냐, 좀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을 하면 호를 바꾸어 가지고 여기 윤미향 의원님이 예시한 대로 폭염, 한파, 황사 또는 미세먼지 등 기상여건을 포함하여 고온, 저온, 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이것을 보건조치, 건강상의 조치의 대상 하나로 특정화해서 별도로 모으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저희들 간에 협의해 봤고, 그런 정도로 하면 결국은 앞으로 기상이변이 자주 닥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업주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는 정도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2페이지에 나오는 윤미향 의원님 안과 박대수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하고도 협의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 오전에 준비하면서 한번 논의해 본 사항입니다.

그것은 문구를 그렇게 해서 별도 호로 신설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지금 36페이지부터 나오는 기상이변에 따른 작업중지나 조치결과 보고의무 이런 별도 규정들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 있는 규정으로서 근로자는 작업중지하고 대피, 사용자는 관리감독자한테 통보하면 관리감독과 필요한 조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 그리고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근로자가 감독관에게 신고한다든지 기존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이변이라고 해서 별도의 제도·절차를 둘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굳이 개정할 실익이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41페이지 시정조치·작업중지명령, 김성원 의원님 안은 자치단체의 장의 작업중지명령인데 자치단체장이, 새로운 플레이어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보자 하는 거고요, 작업중지명령의 주체로서는. 그다음에 고용부장의 기존의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통해서 조치를 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래서 차관님, 그러면 아까 윤미향 의원님, 박대수 의원님 안 중에서는 별도의 호를 통해서 보건조치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 제도를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필요가 과연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저희들은 조금 소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부분 정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합니까?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저희들 입장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게, 다른 조항들은 예를 들어서 작업중지명령을 정부가 내리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임금 지원해야 된다 이런 조항들은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조금 과다한……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여기서 결론을 낼 수 있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다른 부처하고도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든가 한 상황이 되면……

○임이자 위원 오늘 결론을 낼 수가 없잖아요.

○소위원장 안호영 조금 미뤄서 보류했다가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그러면 보류했다가 다음에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미향 위원 그것 관련해서요, 그래도 제가 낸 법안이기에 때문에 의견을 조금 전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난 한 해 계속 이걸 지켜봐 왔잖아요. 모든 기상여건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원인이 노동자가 쉬어야 할 때, 작업을 중지해야 할 때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였고 현장에서 마찬가지로 법이 있지만, 법으로 그게 충분히 적용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노동현장에서 임금 감소나 또 공기 연장 등의 부담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만들어진 거고요.

첫 번째 것 노동부에서 수정한 건 전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쟁점인 작업중지권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서 실질적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받아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고용노동부에서조차도 현재 기상여건 위험에 따른 노동자의 작업중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작년도도 그랬습니다. 저희가 계속 자료를 요청했지만 그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은 법적으로 보장만 되어 있을 뿐이지 노동부의 관리 감독은 전무하다라는 점에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해서 최소한의 관리 또 감독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도개선이라든가 지원방안 등도 마련을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보완책을 마련해서 다음 소위 때 논의할 수 있도록 보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윤준병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산업안전감독 정보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아까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두는 외에 저희들은 희망컨대 여기에 다른 기관에 필요한 정보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라든지 다른 정보시스템하고의 연계라든지 그런 근거규정, 필요한 비용 확보를 위한 그런 규정들이 쪽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깔끔하게, 전문위원실과 문구 정도까지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문구까지 협의가 되었다고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저희들 희망을 담은 그런 문구가……

○**소위원장 안호영** 문구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얘기가 오늘 중으로 아마 문구 정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러는데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아마 저희들 희망만 전달이 되고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건 픽스가 안 된 모양입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이 부분도 좀 보류했다가 다음 논의할 때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임이자 위원** 일단 위원장님, 산업안전보건법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안 준비하고 정리되면 한번 리뷰하기로 했었는데……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밖에 지금 빨리 준비하시라고.

○**소위원장 안호영** 아까 얘기했던 것 좀 정리해 주시고요.

○**임이자 위원** 이게 정리하려면 시간이 걸리지요?

○**전문위원 최선영** 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이자 위원** 오늘 중에 그걸 해야 되니까, 하려고 한다면 지금 잠시 정회하고 시간을 쪼아 주세요.

○**소위원장 안호영**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쪽 나왔는데 윤준병 의원님 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수정의견까지 논의가 됐지만 오늘 자구 정리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윤준병 위원** 정회시간에 한번 확인 좀 할게요.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시지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장철민 의원 안하고 임종성 의원안도 아까 보고했던가요?

○**전문위원 최선영** 설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 부분 못 했나요?

그 부분 그러면 잠깐 보고해 주시고 정부 측 의견 듣고 산업안전보건법 문제 어떻게 할 건지 정리를 하시지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할 것들, 법안 좀 정리해서 마무리를 하시지요.

그 2개만 먼저 좀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최선영** 자료 55페이지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게시의무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산업재해 발생건수의 공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등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역주민이나 근로자 등에게 산업재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알권리 충족에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고용부장관이 이러한 부분들을 공표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하나 다시 만들어진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임종성 의원안입니다.

이 부분은 폭언 등을 하는 고객과 근로자의 분리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주가 고객과 해당 고객응대근로자를 즉시 분리하여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이 부분은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에 필요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현행 근기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라고 해서 분리조치에 대한 것을 무조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근로자의 요청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장철민 의원님 안은 지난번에 한번 논의되었다가 결론을 못 내리고 한 건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표제도 외에 사업장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게 사실은 또 새로운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세게 할 필요가 있는냐 하는 데 대해서 실무적으로는 조금 새로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걱정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의 분리조치 근거, 임종성 의원님 안은 지금 현재 이미 업무의 일시적 중단에 가해자와의 분리를 포함하고 있고 저희들의 가이드라인에도 즉각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의 실익이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논의는 가능한데 다만 위원님들께서 분리조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을 넣자라고 하면……

의무화하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조문을 보면, ‘분리조치 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시로 넣어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앞에 ‘고객 등 제삼자와의 분리, 업무의 일시적 중단’ 하는 식으로 예시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해 주신다면 수용은 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정부 측 의견 들었는데요. 장철민 의원안, 임종성 의원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준병 위원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계시의무 신설하는 거 고용노동부가 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하는 그 원인, 재해가 저감될 수 있도록 활동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데 이게 사업주에게 부담된다는 얘기를 하면 이것 만들고자 하는 취지를 몰각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자세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것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폭언 등 관련된 내용은 정부안 가능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리고 아까 임종성 의원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윤준병 위원 없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그 안에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 하는 것들이 이제 법이 통과되면서 사용자 처벌조항도 새로 생겼잖아요? 저는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잘 지켜지고 적용이 되는지가 궁금한데 노동부에서 관련해서 그런 실태조사…… 그동안 이런 문제들, 피해자가 생겼을 때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분리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몰라서, 그걸 의무조항으로 갖고 있다면 사용자가 먼저 제안을 하고 이럴 텐데 노동자가 요구를 해야지만 분리조치라든지 기타 조항들이 제시가 된다면 이게 아무래도 개인이 뭔가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조직 안

에서. 지금 임종성 의원님이 계시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의무조항으로 이렇게 두려고 한 건 아닌가.

제가 현장의 상황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추측이 가능한데 노동부가 실태조사나 이런 게 있다면 좀 더 정확하게 의견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실태조사는 필요하면 저희 담당국장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입니다.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문항이 포함돼 있는지는 저희들이 좀 더 확인해 보고요. 포함이 안 돼 있으면 그것 포함해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정회했다가 하시지요.

○소위원장 안호영 잠깐만, 이것만 마무리 정리만 하고 하시지요.

아까 장철민 의원안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이 부담된다는 측면의 얘기를 하셨는데 위원님들 얘기는 그렇더라도 필요하면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인 것 같아요.

○윤준병 위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임이자 위원 아니요, 좀 더…… 고용노동부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을 테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이 부분이 지금……

지금 현재도 충분히 게시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저희들이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0여 개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요.

○임이자 위원 공표를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장철민 의원님 안은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더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좀 더 신중……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다만 해당 사업장의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한다는 이런 방식이 익숙지가 않고 유사 입법례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실무적으로 겁이 조금 나는 겁니다.

○이수진(비) 위원 그러게 진작에 노동부에서 포털을 구축했으면 됐지요.

○윤준병 위원 술선수범을 하셔야지, 뭐가 인터넷

넷에 게재하는 것 가지고 두려워하고……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위원님들께서 모아 주시면 저희들 바꿀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면 이 법……

○**장철민 위원** 이게 부담이 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하는 입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윤준병 위원** 당연하지.

○**임이자 위원** 일단 차관님은 오늘 가는 차관님이시니까 오는 차관님을 통해서 한번 해 봅시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면 오늘은 일단 그 부분을 보류했다가 다음에 그 부분 필요성 여부를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임종성 의원안에 대해서는 아까 정부측에서 수정의견을 냈으니까 그 부분은 자구를 좀 고쳐서……

○**이수진(비) 위원** 위원장님, 어쨌든 제가 이것 아까 물어본 이유는 계속 근무를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시는데 예를 들면 교대근무 사업장 같은 경우는 다음 교대근무자가 나와야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실제 현장은 그렇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렇다면 그런 상황을 대비한 인력이 있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실효성이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부가 검토를 해서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하는 취지의 말씀이지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집행상의 문제고 저희들보고 법규정의 취지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라 뭐 그런 취지로……

○**소위원장 안호영** 법안 찬성은 하되 집행하는데 있어서 실효성 있게 해라 이런 취지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법안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은……

○**이수진(비) 위원** 이런 법이 있어야 노동부든 사용자든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의무조항이 있어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그러니까 맥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조치 자체를 모든 상황에 다 의무화하고, 지금 문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시 중의 하나로 ‘분리조치, 업무 중단 또는 전환’ 이런 식으로 가면,

이렇게 법규정이 들어가면 저희들의 필요한 가이드라인이나 하위규정들이 또 바뀌게 됩니다. 그런 조치를 통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취지를……

○**이수진(비) 위원** 알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법안에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시지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 법안에 반대하는 취지는 아니고 예시하는 취지로 문구를 수정해서 표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정회를 해서요 아까 우리가 논의를 하다가 못 했던 부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그다음에 고용보험하고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 관련해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법안체계가 약간 혼란스러워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니까, 아까 임이자 간사님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 측 수정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의견대로 정리를 해서 이따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것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향 위원** 위원장님, 그 건과 관련해서 제가 의견 있습니다.

산안법 관련해서 박대수 의원, 저 그다음에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그 안에 대해서 첫 번째, 기상여건과 관련해서는 정부 측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번에 법을 통과시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합의되지 않고 있는, 논의해야 될 부분은 김성원 의원도 그에 관련한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해서 다음에 논의가 좀 무르익었을 때 다시 법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가는 차관님한테는 얘기할 것 없고 오는 차관님한테 얘기하자고요.

○**윤미향 위원** 그래도 차관님 역할을 충분히 하시기를……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국장들 다 듣고 있으니까요.

○**소위원장 안호영** 차관님,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건조치의 내용으로 규정하는 게 가능하니까? 지금 윤미향 위원님도 그 얘기이고만요.

○**윤미향 위원** 예,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제가 아까 수정해서 그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아까 윤준병 의원님 관련해서 문구를, 산업안전보건법상 보완해야 될 부분……

○**윤준병 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가 정회할 때 제가 한번 조율해 볼게요.

○**소위원장 안호영** 보완해야 될 부분은 아까 의견을 주셨다고 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윤준병 위원** 예.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면 그 부분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보류했다가……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여기 공무원들이고 보좌관들이고 혹사시키지 마시고 6시에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내용 정리하는 것은 한 15~20분이면 될 거라고 봅니다.

○**윤준병 위원** 정리가 되면 바로 하자고요.

○**이수진(비) 위원** 안건은 다 다루셔야지요……

○**소위원장 안호영**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지요. 이게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 또 다른 분들도 식사시간 이런 게 필요하니까 한 30분 정도, 6시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아까 산재보험법하고 징수법 관련된 부분만 우선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산안법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려고 그러면 짧은 시간에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이자 위원** 산안법은 다음에 합시다. 새로운 차관님이 산재 담당했던 분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그렇습니다. 오늘 못 들었지만 국장들이 나와 있으니까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다른 이야기는 안 하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안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회하기 전에 검토를 요청했던 법안이 있었지요. 16·17·18·19·20·21항까지 법률안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회에서 법안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한 법안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최선영** 배부해 드린 산재보험법 주요 내용과 산재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부분에서는 지금 노무제공자 관련 별도 장을 신설하는 부분과 제공자 정의 그리고 적용제외 신청제도 폐지 등의 부분을 임이자 의원안같이 조문을 정리했고 플랫폼 관련 사항은 임종성 의원안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칙 부분에서 보조사업장에 대한 보호 특례규정 역시 임이자 의원안같이 정리를 했고,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법률안 자료를 가지고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자료가 지금 개정문 형태로 되어 있어서 맨 상단에 있는 부분은 보시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 소위 자료 165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일반적인 법제방식에 따라 기술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근로복지공단 보험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나 범위 같은 내용들을 구체화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소위 자료 165페이지 상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중요한 부분은 제3장의4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부분인데 91조의15 조항에서 노무제공자의 범위 등으로 정의하면서 ‘이 장을 적용함에 있어 노무제공자 등은 다음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각 호에서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플랫폼 운전자, 플랫폼 이용 사업자, 보수, 평균보수 등을 정리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91조의16 부분은 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17은 보험급여 산정기준 그리고 18은 재해의 인정기준 그리고 19는 보험급여의 지급 관련된 사항들이고요.

아까 논의하신 부분에서 특별하게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은 7페이지 부칙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요청에 따라 보험행정의 편의상 ‘이 법은 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면서 ‘다만 부칙 제8조는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칙 제8조는 종전에 설명드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및 보험급여 지급 등의 특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8페이지 하단에 밑줄 부분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임이자 의원안과 동일한 내

용입니다.

그 외 법률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설명이 필요하시면 정부 측으로부터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험료징수법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료징수법 논의사항 반영 주요 내용 자료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징수법에서 아까 논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보험료 전액부담 직종에 대한 단서조항을 유지하는 부분인데 이 사항은 5페이지를 보시면 '다만 사용종속관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한다'라고 현행 규정과 동일하게 단서규정을 두었고.

전용계좌 관련해서는 전용계좌의 개설의무를 그대로 두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인데 자료 8페이지 6항에 보시면 '플랫폼 운영자는 제4항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를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라고 6항에 그 조항을 두었고, 자료 10페이지 부분에서 납부를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 과태료규정으로 두었습니다.

그 외 징수법에 대해서도 조문과 관련된 상세 내용이 필요하시면 정부로부터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정부는 지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같이 봤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아까 우리가 협의했던 취지와 다르게 정리된 부분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달리 정리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전문위원하고 또 정부 측, 전문위원이 마련한 법률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들었는데요. 혹시 위원님들 이 안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이견 있습니까?

○임이자 위원 좀 읽어 봅시다.

○소위원장 안호영 아까 설명 다……

○임이자 위원 새로 갖고 왔으니깐.

○소위원장 안호영 그래요, 한번 보세요.

○이수진(비) 위원 잠깐, 읽어 보시니까……

제가 아까 환경문제가 있어서 용산 미군기지 쪽을 다녀오느라고 좀 늦게 오느라고 지나갔는데요.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

한 법률, 소위에서 아까 논의하셨지 않습니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그리고 또 각종 산재심사위원회 이런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이수진(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집행유예를 만약에 선고받거나 그러면 자격제한을 두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근로자위원 같은 경우 상급단체에서 각종 집회라든지 기타 집단행동, 파업을 포함한 노동삼권 중에 단체행동권이 발효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만약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이런 분들이 활동들을 많이 하실 텐데, 노동계는 정책조직 이런 게 따로 있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나와서 같이 활동들을 하는데 이런 조항이 들어갈 경우에는 사실 사용주나 정부, 공익보다는 노동자위원들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제한이 가는 그런 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관련해서 노동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따로 얘기가 있으셨나요?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의 결격사유나 이게 고용보험심사위나 산재보험재심사위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의 경우에도 그 위원의 결격요건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하나의 준거가 돼 가지고 그와 유사한 여러 가지 조항들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그런데 민간위원들에게 사실 공무원 결격사유를 그렇게 기계적으로 다 적용을 해 버리면 전문성이라든지 활동하는 특성이라든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규정을 해 버리면 정말 훌륭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리고 노동계 같은 경우는 직함들이 있을 거고 그 직함에 맞게 위원회에 참여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조직의 어떤 그런 기준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참여시켜야 되는 일이 생긴다라면,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 참여시켜야 된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노동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것을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권에 따라서는 판결이 어떤 경우에는 무혐의 내지는 문제없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작은 것 가지고도 가중처벌하고 상황을 어렵게 꼬기도 하고, 이게 사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식으로 정확하게 법의 잣대가 정해지지 않는다 이런 노동자, 서민들의 불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격 결격사유를 공무원에 준해서 만들어 놓는다는 게 특히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산재보험심사위원회 이런 데에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 근로자위원이 참여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그러니까 개정안 규정 뿐만 아니라 현행 규정에도 그런 규정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법 외에 여러 가지 규정들에서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다 마찬가지로 유사한 결격사유에 관한 그런 규정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노동위원회부터 그것을……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있게 논의도 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저도 생각이 드는데……

○**이수진(비) 위원**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그랬던 것은……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결격사유를 노동자위원 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라고 해서 달리하는 것은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만약에 푼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수준이 적정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것으로 인해서 근로자위원을 선택적으로 정부가 선택하려 한다 이런 시각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이 규정 자체가 근로자위원을 타깃으로 하거나 근로자위원이 위원으로 선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것으로 한 것은 아닌데……

○**이수진(비) 위원** 타깃을 하려고 법을 만들지는 않겠으나……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형의 선고를 받고, 근로자위원들이 노동운동을 하다가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 중에는 그러면 법에 의한 위원으로서 임용되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

○**이수진(비) 위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밝힙

니다.

○**윤미향 위원** 위원장님,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아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하고 징수법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견 없으시지요?

○**임이자 위원** 잠깐만요, 전속성은 폐지하는 것이고요.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산재보험법 주요 내용에 보게 되면 노무제공자 관련해서 별도의 장을 신설한다는 거지요, 제3장의4로 규정하는 것이고.

전속성에서 특정 사업장예의 전속성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고요.

노무제공 성격에서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것, 그다음에 직종 선정기준에서는 업무상 재해 보호 필요성이라든가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을 선정기준으로 한다 이거지요. 노무제공 방식에 따른 구분은 사업주와의 관계에 따라 구분하겠다.

그다음에 적용제외 신청제도 폐지, 이것은 폐지 및 휴업 등 신고 도입을 했고요.

플랫폼 노동 관련 사항에서는 플랫폼 운영자에 관한 특례로 규정을 해 났고요. 맞지요?

그다음에 공포 후 법 시행 전 기간 동안 보조사업장 보호 특례규정을 하기로 했고.

이렇게 됐지요? 이게 다인가요?

○**소위원장 안호영** 예.

○**임이자 위원** 그다음에 징수법 관련돼 가지고는 보험료 전액부담 직종 선정 근거 단서조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사용자가 전액을 지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춰서 유지시켜 놓는 게 낫겠다.

그다음에 전용계좌 개설의무는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운영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됐지요?

○**소위원장 안호영** 예.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합의된 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3건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3건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진(비) 위원 위원장님, 이의는 없는데요, 아까 제가 우려사항을 노동부에 전달했거든요. 관련해서 속기록에는 남겨 주시고 대응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안호영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임이자 위원 14항 했나? 이것 전체 다 하지

않았어요?

○윤미향 위원 예, 했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아까 11, 12, 13은 안 하고……

○임이자 위원 14항은 했어요?

○윤미향 위원 예.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안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서 아까 의견을 모았지요. 내용이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취소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임이자 위원 동의합니다. 하세요.

○소위원장 안호영 의사일정 14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3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 그리고 제24항부터 제27항까지 이상 7건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법안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시만요. 뭘 마쳐요, 왜 나머지 법안 논의를 안 하시고

될 마쳐요?

○임이자 위원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이수진(비) 위원 언제 다음에 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런 애기한 적 없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정회할 때 말씀해 주셨어야지요.

법안 논의하시기로 하셔 놓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이자 위원 다음에 좀 합시다, 다음에.

○이수진(비) 위원 다음에 하시다니요. 안 됩니다. 지금 저는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임이자 위원 그러면 하십시오, 우리는 갈 테니까요.

○이수진(비) 위원 왜 그런 식으로 회의진행을 하십니까!

○임이자 위원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이수진(비) 위원 저한테 다음에 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안 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정회할 때 문구 조정, 그 법안 문구 조정만 하시고 보고받고 나머지 추가로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의견 한번 들어 보시지요.

○이수진(비) 위원 아니, 같은 위원끼리 지금 위원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임이자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간사 간에 합의해서 하는데……

○이수진(비) 위원 간사 간에 무슨 합의를 해요.

○임이자 위원 간사 간에 합의해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간사 간 합의 없이 일정을 짚니까?

○이수진(비) 위원 아니, 법안 상정 왜 하셨습니까? 법안 상정도 간사 간의 합의 아닙니까?

○임이자 위원 아니, 법안 상정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6시까지만 하자고?

○이수진(비) 위원 그러면 6시 안에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끔 회의진행이 됐어야지요.

○임이자 위원 아니, 회의진행은 그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하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놀면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러세요?

○이수진(비) 위원 법안 상정을 해 놓고 안 하는 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지요.

임이자 간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임이자 위원 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수진(비) 위원 이것 법안 상정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법안 상정할 때 간사 간에 합의하기는 하지만 위원들한테 의견 물어봐 가지고 법안 올라온 것 아닙니까? 논의하기로 올린 법안을 논의조차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견 없는 법안 이번에 올려서 상의한다고 그랬잖아요.

○임이자 위원 아니, 안건이 올라온다고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100건 올라오면 100건 다 할 수 있어요?

○이수진(비) 위원 이견 없는 법안 올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전제조건이 이견이 없는 법안 올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임이자 위원 그것은 안호영 간사가 알아서 하세요.

○이수진(비)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이견 있다고 지금 법안 논의 안 하겠다는 그런 얘기이십니까?

○임이자 위원 아까 제가 좀 살펴봤는데 쟁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그럼 살펴보시자고요, 쟁점이 뭐가 있는지, 논의를 해 보시자고요.

○임이자 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잖아요. 보좌진들 생각도 좀 하세요, 공무원들 생각도 하시고.

○이수진(비) 위원 쟁점이 뭐가 있는지 논의해 보시자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 다르면 됩니까? 서로 간의 신뢰가 있는 거지……

○임이자 위원 아니, 제가 아까 살펴봤는데 쟁점이 많더라고요, 쟁점이.

○이수진(비) 위원 아니, 회의 오늘 하루 하고 말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이자 위원 안호영 간사가 알아서 하십시오.

○이수진(비) 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법안 논의해 주십시오. 법안 논의해 주세요. 안호영 간사님, 법안 논의해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 아니, 간사 간에 합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을 그렇게 막 밀어붙인다고 한다고 하세요?

○이수진(비) 위원 아니, 무슨 말씀하세요. 간사 간의 첫 번째 합의는 무엇입니까? 법안 안건 상정 합의 아닙니까?

○임이자 위원 안전 상정을 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이수진(비) 위원 안전 상정했으면 다 보셔야지요.

○임이자 위원 안전 상정했다고 다 할 수 있어요?

○이수진(비) 위원 그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말이 안 됩니다. 사기 치는 것도 아니고 끝낸다는 말도 안 해 놓고서는 갑자기 방망이를 두드리는 게 어디 있어요.

무슨 회의를 그렇게 하십니까? 장관 청문 통과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아직 잉크도 안 말랐는데 지금 그렇게 하십니까?

민주당 위원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쟁점 없는 법안 올려서 하자고 그래서 간사 간에 합의해가지고 안전 올린 것 아닙니까?

간사님, 회의진행해 주십시오. 계속해 주십시오. 저 저녁 약속 다 취소했고요.

안전 올리실 때 저희 위원들한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쟁점 없는 안전 간사 간에 합의해서 올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회할 때도 회의 마친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일을 안 하는 환노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한 달 만에 회의 열었잖아요. 아니, 한 달이 아니지. 소위도 제가 지난번 소위 자료 봤더니 5개월 만에 소위 했더라고요, 그때도 노동법안소위를. 전체회의도 5개월 만에 했어요. 그러면 지금 벌써 소위가 얼마 만에 하는 겁니까? 충분히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6월 1일 지방선거 있다고 다 지역에 가서 계속 일하신다 그러고…… 회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은 그것은 뭐니까, 지연작전 아닙니까?

국민의힘 간사의 자세가 문제가 있습니다. 동료 위원들 존중해 줘야지요.

진행해 주십시오, 빨리. 그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니까 진행시간 때문에 상의 좀 하려고 그러니까 잠깐……

그래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이수진(비) 위원 시간 없으면서 왜 정회를 또 해요. 빨리 노동부랑 전문위원님 얘기 듣고 하시면 되지……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면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는데요, 전문위원 의견과 정부 쪽 의

견을 듣고 쟁점이 있는 부분들은 보류해서 추후에 또 논의를 하더라도 우선 잠깐 안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녁식사 시간들이 있어서 좀 애매한데요. 가능하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차관님을 비롯해서 보좌진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마는 원활하게 회의진행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심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이수진 의원안, 자료 6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대상을 재직근로자로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임금채불에 대한 자료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상습 임금채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 그리고 임금채불에 대한 반의사불벌규정의 적용범위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자료 66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대상을 재직근로자로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37조에 근거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라는 내용입니다. 재직근로자의 보호 부분에서 강화가 있을 것 같고 지연이자를 적용을 재직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라는 것이 민사상 채권이기 때문에 행정법적인 성격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입니다.

자료 71페이지 국가 등의 입찰참여 사업주의 임금채불 자료제공 근거 마련인데요. 조문대비표

74페이지를 보시는 것이 보다 편리하실 것 같아서 74페이지 조문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43조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 부분들을 보다 자세히 기술하면서 제2항에서 새로운 내용을 신설하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2항 설명드리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등을 위하여 체불 사업주의 임금 등 체불자료를 요구할 때 공공기관에 그러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조문자료가 아닌, 다시 돌아와서 71페이지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습체불자 대한 제재 강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요건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상 명단공개제도와 신용제재제도를 이미 두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체불금액의 기준이 3년 동안 2회 이상 그리고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보제공하는 요건이 3년 동안 1회 이상 그리고 임금체불액이 1000만 원 이상으로 보다 그 범위를 넓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통일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72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명단 공개나 신용제재에 있어서는 체불사업주가 사망하거나 폐업하는 등으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자료제공의 예외를 두고 있는데 개정안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제공에 따른 입찰제한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체불변제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이러한 단서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부분은 76페이지, 세 번째 주요 내용으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주가 2년 동안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3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등의 2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임금체불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고용부에서 근로감독관에 의한 청산지도의 관계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항이 있고, 77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요건과 관련해서 지금 하단 박스에 있는 기간제법에서는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 등 고의성을 하나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건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체납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통상적으로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금체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정보를 수집해서 시의적절한 지도 감독을 하려는 개정안의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제시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내용입니다.

현행 근기법에서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것을 5년으로 연장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보호의 측면과 반면에 민법에서 금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부처에서는 소멸시효 연장에 대해서 거래의 안전이나 법적 안정성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함께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반의사불벌규정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근로기준법상 반의사불벌규정의 적용 대상’이라는 박스를 우선 보시면 현재 근로기준법상에서는 금품청산, 임금지급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 반의사불벌규정의 범위를 축소해서 이러한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임금 합계가 평균임금의 5분의 1 미만이고 피해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한해서만 반의사불벌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체불임금 청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반의사불벌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입법례가 현재 없다는 점이 고려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전문위원 보고에 대해서 차관님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임금체불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규정들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저도 순서대로, 66페이지 지연이자제도를 제직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지연이자율이 지금 연 20%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체불 사건이 통상임금 계산상의 실수나 착오 이런 경우까지 포함하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 내지 다른 게 걱정이 될 수 있다는 거고, 특히 과태료 부과에 아까 전문위원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절한 수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임금체불 사업주는 저희들이 명단을 공개하고 그다음에 또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용기관을 통해서 신용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의원님 제안하시는 안은 체불 사업주가 입찰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도록……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지금 주신 안에 따르면 조금 더 범위가 넓습니다. 신용제재 대상보다는 그 요건이 완화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재의 대상이 훨씬 넓어지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검토가 더 필요하다 이런 취지인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부가금제도도 아까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있고 특히 여기에 보면 대상 요건 중에서 임금의 일부를 3개월 이상 이런 정도의 요건만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임금 계산에 있어서의 착오에 의한 임금체불의 사건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체납 정보를 향후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으로 보고서 그 정보를 요청하자 했는데 건강보험료 체납 정보가 굉장히 방대하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감독행정의

체불 예방에 직접 활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도 건강보험 체납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금채권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문제는 전반적인 채권 소멸시효와 같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우선변제 대상으로 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그리고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서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이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면 그만큼 다른 채권의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규정은 법무부에서도 요건을 붙여서 일부만 반의사불벌죄로 하는 경우는 사례가 없다 하는 게 있고, 실질적인 효과 측면에서 반의사불벌죄로 하면서 저희들이 사실은 감독관의 지도에 의해서 체불을 청산하는 그리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처벌하지 아니하는 식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는 것은 조금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지금 죽 말씀을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정부 의견은 다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이 안 중에서 동의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의원님 원안을 다 그대로 받기에는 좀 곤란하고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개선 대안을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질문 좀 드릴게요.

저는 지금 차관님 말씀에 굉장히 실망스러운데요. 근로감독관 업무 중에 상당 부분이 임금체불이 문제 해결하는 데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산재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런 국민적 질책 직접지 않으십니까? 벗어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일은 일답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낸 법안이,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노동부도 그렇고 사실 2020년 기준으로 신고건수만 20만 건, 피해 노동자 30만 명, 피해액 1조 5000억,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게, 지금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것 박근혜정부 때 정부안입니다. 이 정부안이랑 제 것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참 재밌지요? 지금 정부는 왜 이게 안 되는 겁니까? 박근혜정부에서 정부안으로 냈어요.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첫 번째,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대상 확대, 거기 똑같아요.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그리고 두 번째, 경쟁입찰 등에서의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 근거 마련. 세 번째,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부가금 근거 마련 그다음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마련.

제가 많이 다르다 이러면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무리한 법안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릴 텐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서 노동부가 마련했던 거예요. 이것은 여야를 넘어서서, 좌우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임금체불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있는 노동부 공무원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만들어 놔야 실효적이지 않을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과거 정권 때부터 논의가 됐던 내용들이고요.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아까 검토하신 전문위원 말대로 저는 일정 부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각 제재의 요건 비교했을 때 명단공개, 신용제재 체불금액 기준 맞추는 것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연이자에 과태료 부과하는 것, 이것 정말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금은 좀 어렵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그 의견을 수용할 의사도 있습니다. 또 예외규정으로 사망이나 폐업 두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부안대로 제가 수용 가능합니다.

논의도 안 해 보고, 과거 정권부터 계속 진행됐던 것들인데 언제까지 고용노동부 숙제로 줄어들지 않는 임금체불 그냥 업고 가실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차관께서 전문위원이 조정안 만든 것들에 대해서 논의해서 가지고 정리를 해서 정리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용할 건 수용하고 논의할 수 있다라고 생

각합니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임금체불 신고 사건이나 체불액수는 저희들이 가끔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기도 하는데 줄어 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에서도 체불액수가 줄어드는 게 팩트니까 그것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의원님과 유사한 안이 예전에 여러 의원님들의 안으로도 제출되어 있고, 저도 기억이 납니다. 조금 전에 저도 확인을 했는데 이게 정부안으로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체불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수립이 된 바가 있고 그중의 일부는 입법을, 위원님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대지급금으로 용어 변경하면서 또 체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도개선한 그런 법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게 통과되는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할 때 이게 정부안까지 나오면서도, 그것도 박근혜정부에서 나오면서도 이게 통과가 못된 게 논의과정에서 이러저러한 걱정 내지 우려점이 제기가 되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살펴보자 이렇게 해서 진전이 안 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런 차원에서 여전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서 논의를 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수진(비) 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도 아니고 그동안 논의과정이 있었고 그러면 그 논의과정 때마다 하나하나 해결해서 합의안을 만드시는 게 노동부가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근로기준국장 어디 계세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최현석** 예, 근로기준국장입니다.

○**이수진(비) 위원** 그러면 박근혜정부 때 이 안이,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것 박근혜정부가 잘못 만든 정부안이지요? 지금 반대하시는 이유는 박근혜정부랑 크게 다르지 않은 제 안이 잘못됐다는 얘기고, 박근혜정부 때 임금체불 관련한 이 근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잘못된 것 맞지요? 직접 말씀하세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최현석** 여러 위원님들께서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이수진(비) 위원** 말씀하시라고요. 잘못된 것 맞지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최현석** 거기에 대해서 방향들을 설정, 제안을 해 주시고 하셨는데……

○**이수진(비) 위원** 아니, 아까 차관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근로기준국장이 실무 검토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 법안이 벌써 몇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인데 지금 제 법안에 대해서 문제 있다, 이견 있다 말씀하시는 것은 박근혜정부에서 만든 노동부 근기법, 임금체불 방지법 이것 문제 있다라는 거지요? 문제 있다 맞지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까, 지금?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최현석** 의원님 발의하신 취지를 최대한 공감을 하고요. 다만 현장에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이수진(비) 위원** 지금 현장의 부작용이 뭐가 더 큼니까? 임금을 못 받고 생계 위협받는 노동자의 문제가 더 큼니까, 아니면 몇 년을 검토했는데 방법을 만들지 못한 노동부의 판단이 더 중요합니까?

○**소위원장 안호영** 잠깐만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하시지요.

우선 그 법안을 발의를 했고 또 전문위원과 정부 측 검토의견을 들었고 이 안에 대한 입법취지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수진 위원님 말씀이 좀 있었고요. 정부 측도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점이 좀 있다는 취지니까……

그런데 이게 검토한다고 계속 시간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안들을 좀 더 검토하셔서 다음에 우리 소위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측의 실질적인 진전된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검토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어차피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하고……

○**이수진(비) 위원** 위원장님, 저는 오늘 노동부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뭐든지 안 된다, 어렵다 여기서 끝나면 도대체 현장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노동자도 문제지만 현장 노동부 직원들도 문제입니다. 이 많은 체불임금 사건을 왜 근로감독관한테 계속 맡겨 놓고 해결 못 하고 있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획기적으로 현장에서 줄어들어야 됩니다.

정 그렇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동부 수정의견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법안 소위를 할 때 노동부가 실질적으로 이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현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수정대안을 가지고 와서 실질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제가 있는 동안에 그렇게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쉽게 의원님이 제출해 주신 법안에 대해서 마무리를 못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마는 일단 저희 직원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한 대안들을 찾아서 한번 다시 협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예,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나머지 법안들이 장철민 의원님 제안한 안이 있고 또 강은미 의원께서 제안한 법안이 있고 박대출 의원께서 제안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 제정법이 있는데 근로자의 날 제정법 부분에 대해서는 임이자 간사님이 회의장소에서 말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검토할 점이 좀 있다고 하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장철민 의원이나 강은미 의원이나 박대출 의원께서 제안한 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오늘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빠른 시일 내에 야당 간사님과, 이제 여야가 바뀌었네요, 여당 간사님과 협의를 해서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열어서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법안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	응	안	호	영	윤	미	향	윤	준	병
이수진(비)	임	이	자	장	철	민				

○출석 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최	선	영
---	---	---	---	---	---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고용노동부				
차	관	박	화	진
기획조정실장		박	성	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김	철	희
통합고용정책국장		황	보	국
정책기획관		박	준	호
국제협력관		노	길	준
고용서비스정책관		김	성	호
노사협력정책관		양	성	필
근로기준정책관		최	현	석
근로감독정책단장		박	중	필